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본 계획안은 2010.10.0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0.29일 제173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1. 제안이유

○ 지역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사업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보건의료 발전을 제시 하고자 함.

○ 이에 본 계획의 제출을 위한 지역보건법 제3조(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등)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골자

가. 수립내용 : 제5기(2011~2014)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

나. 수립목적 :

○ 만성질환관리, 예방적 건강관리나 건강증진사업에 주안점을 두었고 의료취약의 현안문제로 보건의료원이 해결해야 할 전문의 진료나 응급의료체계구축, 전 군민 건강검진 수행 등에 대한 대안책을 모색함.

○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중심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참여하여 내실화와 필수사업의 집중으로 정리.

○ 지역사회의 욕구를 수용하고 국가보건정책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 하였음.

다. 주요사업 목표

○ 응급의료기금의 예산을 지원 받아 의료취약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응급 의료기관으로 승격을 추진.

○ 조기 검진체계를 갖추기 위해 국비 보조를 바탕으로 검진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.

○ 보건지소 중심의 재활치료실 운영을 확대하고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집중하여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.

○ 요양급 병실 운영을 위한 특수병동 설치 추진.

○ 전염병 감시 체계를 확보하여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.

라. 중점사업 내용

○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

- 지역실정에 맞는 방문보건팀을 구성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문제 해소 및 복지서비스 제공

○ 진료사업 : 응급의료 진료강화와 암 검진 등 종합검진센터 운영

마. 기타 지속사업 추진

○ 위 중점사업을 제외한 지역보건법 제9조의 모든 업무
공중보건의사 관리 및 활용등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○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1항에 의거 시장군수가 수립하여 당해 시군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○ 본 계획은 20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5기 계획으로, 지역보건의료향상을 위하여 주민들의 건강욕구 충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의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안임.

○ 지역주민, 전문가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였으며,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.